

19. 대구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지원 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: 2022년 9월 2일
- 발 의 자 : 이영애 의원, 김재우 의원, 김정옥 의원, 류종우 의원  
박소영 의원, 박종필 의원, 손한국 의원, 육정미 의원  
이재숙 의원, 허시영 의원
- 회부일자 : 2022년 9월 6일
- 상정일자 :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 
제1차 문화복지위원회(2022년 9월 19일) 원안 가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이영애 의원)

### □ 제안이유

- 본 제정안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내용

-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목적을 규정(안 제1조)
-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제공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
-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편의제공 사항에 대하여 규정(안 제4조, 제5조)
- 청각장애인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, 단체 등에 대한 행·재정적 지원 사항과 공무원,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사항 규정(안 제6조, 제7조)
- 민간에 편의시설 설치 권장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(안 제8조, 제9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이규홍)

### □ 주요 검토사항

- **안 제1조**는 상위법에서 규정(장애인복지법 제22조)<sup>25)</sup>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이행하고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,
- **안 제3조**는 청각장애인이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 제공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.

25) 제22조(정보에의 접근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·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,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도록 규정하였으며,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명시하였음.
- 안 제6조 및 안 제7조까지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, 단체 등에 대한 행·재정적 지원사항과 공무원,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고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, 단체 등에 대한 포상을 명시하였음.

## □ 검토결과

- 청각장애인의 장애정도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(장애의 종류 및 기준) [별표1] 에 따라 ①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 ②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이고,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③말소리의 명료도가 50% 이하인 사람 ④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음.
-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실태조사 결과(2017년)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

의사소통방법은 ‘말’ 로 88%의 비율을 차지하며, ‘수화’ 사용 3.8%, ‘구화’ 3.4%의 순임. 2014년과 비교하여 ‘말’ 을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은 보청기 사용의 증가에 따른 원인으로 판단됨.

- 청각장애인의 비율은 전국 등록장애인 중 지체장애인(44.71%)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(15.82%)이며, 대구시의 경우 등록장애인 12만 6,882명 중 청각장애인은 2만 6,286명으로 20.72%에 해당함.

[2022년 등록장애인 현황('22.7.31기준)]

(단위 : 명, %)

구 분	계	지 체	청 각	뇌 병 변	시 각	지 적	정 신	기타장애
전 국	2,636,267	1,178,562	417,043	243,578	250,258	223,566	104,044	219,216
비 율 ( % )	100	44.71	15.82	9.24	9.49	8.48	3.95	8.31
대 구	126,882	49,930	26,286	12,241	11,770	10,570	5,918	10,167
비 율 ( % )	100	39.35	20.72	9.65	9.28	8.33	4.66	8.01

※ 출처 : 보건복지부

- 대구시에서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청각·언어장애인 직업훈련 및 교육지원, 청각·언어장애인 상담지도, 출장 수화통역서비스 등 연간 26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
[대구시 청각장애인 복지지원사업]

- 4개 사업 2,602,143천원
  - 청각·언어장애인복지관 운영 : 1,267,300천원
  -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: 1,151,743천원
  - 농아인협회 행사지원 : 14,000천원
  - 수화, 영상도서 제작보급사업(22년부터 문체국 소관) : 169,100천원

- 서울시를 비롯한 9개 광역시·도에서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, 대구시에서도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 보임.
- 조례 제정으로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문자통역 또는 수어통역 전용 시스템 등의 장치를 이용한 편의시설 설치와 공공행사, 공공시설 이용 등에서 문자통역, 수어통역 등 청각장애인에게 접근이 용이한 형태로 편의제공이 조성되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음.
- 다만 조례에 명시된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편의제공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점검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, 교육 및 관리사업 등을 다시 한번 점검·확인하여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,
-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·군 및 민간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하고,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시민적인 이해와 이용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 강화 등 방안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임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지원 조례상의 편의시설 설치와 편의제공 규정들이 선언적인 문구 위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.	실질적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고민해 보겠음.

## 5. 토론요지

- 없음.

## 6. 수정안 요지

- 없음.

## 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)

## 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.

## 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.